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정기예방접종 종목 개정과 백신의 활용가능성 변화에 맞추어 유료접종의 종목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함
(제2조, 제3조, 별표)

나. 유료접종대상종목 중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렙토스피라증은 삭제하고, B형간염 임시에방접종은 유료접종항목에 추가하며, 수수료 금액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정하도록 함. (별표의 제3호)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해 규정한 조례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및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료접종종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항별 개정내용 검토결과

1) 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관계법 개정경과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험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1999년 2월 8일 종전의 “국민의료 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관리체계가 단일보험자로 통합된 바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용어변경이 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전문개정(2001.5. 24)한 바 있고, 이어 2001년 9월 29일 동법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1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1종수급권자로, 이외의 자를 2종수급권자로 하는 등 급여대상 및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1종수급권자의 범위확대(2003. 1. 2), 수급대상에 희귀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추가(2003. 12. 30) 등 개정이 됨에 따라, 본 조례 관계조항의 상위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안 제2조제2항제1호 조문내용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1987. 8. 22. 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1999년 5월 9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어 위생분야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소지의무가 폐지된데 따른 것입니다.

3) [별표] 수수료액표 중 유료접종 종목을 변경한 것은 “전염병예방법”(2000. 1. 12. 개정)에서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된 “디프테리아, 홍역,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을 무료접종 대상으로 하고, 최근 거의 사용실적이 없는 “렙토스피라”를 유료접종 종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B형간염”을 추가한 내용으로서,

현재 각 보건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 국민의료보험법(폐지 1999. 2. 8, 법률 제5854호)

○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제정, 2004. 1.29 제9차개정 법률 제7144호)

第42條 (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療養給與費用은 公團의 理事長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 契約으로 정한다. 이 경우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그 契約은 公團과 각 療養機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61호)

제23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라 함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24조 (계약의 내용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의료급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60호)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신부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4.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부령 제254호)

제8조 삭제 <1999.5.29>

※ 개정전 조문내용

제8조 (건강진단수첩)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진단수첩에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염병예방법(법률 제7148호)

第11條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